

# 부산광역시사하구도로점용료등징수조례안

의안 번호	32
----------	----

제출년월일: 2002. 12. 3.

제 출 자: 사하구청장

## 1. 제안사유

도로법제77조(감독관청의 승인)의 규정에 의거 구도노선인정에 대한 부산광역시의 승인으로 구도로의 관리주체가 사하구로 변경되어 이에 따라 구도로와 관련된 도로점용료 등의 세입귀속주체가 부산광역시에서 사하구로 변경되어 도로점용료 등 징수조례를 신설코자 하는 것임

## 2. 주요골자

- 가. 조례신설의 목적
- 나.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산정기준
- 다. 도로점용료 징수시기 및 분할납부 방법
- 라. 점용료 징수방법 등

## 3. 관계법령

- 가. 도로법제43조(점용료의 징수)
- 나. 도로법제86조의2(과태료)
- 다. 도로법시행령제26조의2(점용료산정기준)

## 부산광역시사하구도로점용료등징수조례안

부산광역시사하구도로점용료등징수조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도로법제43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료 및 도로법제8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·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점용료 및 과태료의 산정기준) 도로점용료(이하“점용료”라 한다)는 도로법 시행령 별표2 소재지관의 읍지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하며 과태료는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.

제3조(점용료의 징수시기) ①점용료의 징수시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.

1.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허가를 할 때에 전액 징수한다.
2.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때에는 점용허가를 하는 당해 연도분은 허가를 할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당해연도 개시 후 3개월이 경과되기 전에 징수한다.

제4조(점용료의 분할납부) ①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거나 지방세법제41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연4회이내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를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납부잔액에 대하여 연8퍼센트의 이자를 붙인다. 다만, 지방세법제41조 각호의 1에 해당하여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자를 붙이지 아니한다.

제5조(점용료의 징수)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.

- 부 칙 -

(시행일) 이 조례는 2003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.

## 【 별 표 】

## 과 태 료 부 과 기 준

위 반 사 항	적용법조	부 과 기 준	과태료상한액
도로법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자	도로법제86조의 2제1항제1호	점 용 면 적 ( m <sup>2</sup> ) × 20,000원	3,000,000원
도로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에 적치한 자	도로법제86조의 2제2항제2호	점용면적(m <sup>2</sup> )× 20,000원	500,000원